

# 한국정밀공학회지 논문투고 및 게재규정

제정 1984년 1월 6일

개정 2015년 10월 16일

**제1조 목적****제2조 투고자****제3조 책임 및 윤리규정 준수****제4조 연구범위****제5조 투고 구분****제6조 접수****제7조 심사 및 게재 결정****제8조 저작권****제9조 자료공개****제10조 원고작성요령****제11조 게재료****제1조(목적)**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밀공학회(이하 학회라 한다)의 한국정밀공학회지(이하 학회지라 한다) 논문의 투고 및 게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투고자)**

투고논문의 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. 단, 편집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3조(책임 및 윤리규정 준수)**

가. 투고논문의 책임은 저자(들)에게 있다.

나. 투고논문에 대하여 모든 저자들은 ‘(사)한국정밀공학회 학술활동 윤리규정’을 준수하여야 한다. 학술활동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편집장은 논문의 게재를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연구범위)**

논문의 연구범위는 정밀가공, 정밀측정, 로봇 제어 자동화, 생산시스템, 설계 및 재료, 공작기계, 나노마이크로기술, 생체공학, 임의형상제조시스템, 녹색생산기술 등 정밀공학 관련분야로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.

**제5조(투고 구분)**

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, 기본면수는 8면 이내로 하되 내용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.

가. 일반논문: 학술성 또는 실용성이나 응용성이 우수한 논문

나. 특집논문: 별도로 규정된 특집논문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

다. 기타투고: 전망, 해설, 강좌, 기타 원고 등

**제6조(접수)**

가.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에 접수절차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.

나. 논문은 학회에서 규정한 원고작성양식(Template)에 따라 작성한 후 등록 제출한다. 단,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다. 학회 '논문투고및게재규정'과 '논문집필요령'에 위배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.

라.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.

## 제7조(심사 및 게재 결정)

가.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장이 결정한다.

나. 논문의 심사는 편집장이 추천한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되며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절차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.

## 제8조(저작권)

가.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(들)에게 있다.

나. 저자(들)는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교신저자는 '한국정밀공학회지 연구윤리 및 저작권 동의서'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다. 게재된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,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.

라. 저자(들)는 자신(들)의 다른 연구물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기타투고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, 그 내용의 출처로 게재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.

## 제9조(자료공개)

학회는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을 인쇄물과 온라인 출판물 등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.

## 제10조(원고작성요령)

가. 학회에 투고하는 원고의 작성방법 및 편집은 별도로 규정된 '논문집필요령'에 따른다.

나. 편집위원회는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용어, 문자, 맞춤법 등을 '논문집필요령'에 부합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.

## 제11조(게재료)

저자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규정면수를 초과한 논문의 경우 초과 면에 대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초과 면에 대한 게재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8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